

〈이용계약에 관한 사항〉

1. 계약기간

：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수급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,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.

1) 가장좋은노인복지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,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한다.

2)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.

3)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, 수급자(보호자)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4)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-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
5)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6)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2. 계약목적

: 지역사회에서 정신적,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(급여제공직원)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(보호자)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,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: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1) 재가급여 월 한도액 (2023.01.01. 기준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2)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(2023.01.01. 기준)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 이상	16,190	150분 이상	46,970
60분 이상	23,480	180분 이상	52,880
90분 이상	31,650	210분 이상	58,930
120분 이상	40,280	240분 이상	65,000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,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받을 권리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받을 권리
-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을 받을 권리
-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를 받을 권리

2)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할 의무
-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
- 인적 사항 등 변경 시, 즉시 통보할 의무
-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,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-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 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
5. 계약해제

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 (될) 수 있다.

- 1)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협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)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)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4) 일시적인 병원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- 5)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
- 6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